

교역자 퇴직금 정산에 관한 규정



제 1 조 (자격)

퇴직금은 청빙 후 1년 이상을 근속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 2 조 (지급방법)

1) 청빙 1년 경과 후 다음 년도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첫째 근무기간은 사임 때 잔여 기간과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예) 2020년 5월 1일 청빙 되었다면 2020년 12월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2021년 12월 처음 퇴직금을 지급하며, 2022년 7월에 사임하면 2022년 7개월과 2020년 8개월을 합해서(총 15개월) 1년분과 12분의 3을 지급한다.

2) 처음 청빙 되었을 때는 파트타임으로 청빙되고, 1년 후 해프타임으로 변경 시 파트타임 해당 기간을 2방향대로 먼저 계산 후 지급한다.

제 3 조 (제정과 효력)

이 규정은 2022년 2월 13일, 제 630차 2022년 2월 정기당회에서 결의하여 바로 그 효력을 갖는다.